##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268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 장종태·문진석·이성윤

안규백 • 김영환 • 김기표

김선민 • 박지원 • 김남희

전종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직원이거 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해당 직원의 연금수급권 발생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퇴직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

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 6항 신설).

법률 제 호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족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급여의	제한)	1	~	5	제27조(급여의 제한)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⑥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
					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
					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
					<u>니할 수 있다.</u>